

자.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3조)

설계도서 제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규모 취락시설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위탁함.

차. 책임기술자의 자격조건 강화 및 정비(안 별표 5)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서 건축사에게도 실무경력 2년의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기술자의 자격 표를 정비함.

카. 안전점검 등을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확대(안 별표 12)

현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을 책임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전체로 확대함.

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15)

법 개정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한국수안(이동섭) ② 동양콘크리트산업(주)(신상훈)
③ (주)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1-269-0306 ② 02-597-2950 ③ 043-230-7801

2. 명칭 : 비점오염처리 및 우수유출저감 기능을 가진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우수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우수를 집수하는 빗물받이, 초기우수를 1차 처리하는 필터 및 스크린이 설치된 처리시설을 걸쳐 시설 하단부 저류조에 유입되어 저류조 외측에 설치된 필터 및 잡석을 통과하면서 오염된 우수를 고효율로 처리하여 깨끗한 지하수의 수자원 확보와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호우시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우수유출 저감으로 도심 및 도로의 침수방지 효과가 가능한 기술로, 저류조 일체형 및 현장조립식으로 설치규모를 축소해 공기 단축 및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간단한 필터부 분리, 흡입세정기 청소방식으로 유지관리 소요인력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술

<범위>

빗물받이 내 우수수위에 따라 역류 유도형 필터통으로 우수를 역류시켜 정화하는 소형 필터부, 월류된 우수를 여과하는 우수유입구를 통해 비점오염을 처리하고 하단에 설치된 저류조로 적정량의 정화수를 일시저류 후 침투하는 우수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